



제278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9년 3월 27일 (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3. 27.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3. 23 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 기관장(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과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에서 정하였던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조문으로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관할 지역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위임
- 각급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6호)
-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사항을 삭제함(장기 재직휴가 폐지)
-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5조제10호)
-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권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5조제27호)
-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권한을 학교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2호)
-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8호, 제7조제6호)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근거규정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동법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수정

나.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관할 지역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 중 관할 지역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다. 각급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6호)

- 각급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 조정한 바, 이는 공무원 범죄 및 비위 발생 시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의 의원면직 권한을 사건은폐 및 축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라.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사항 삭제

- 행정기관의 토요일무제 실시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제도가 폐지되어 장기재직 휴가 허가 사항을 삭제함

마.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

· 지급권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5조제10호, 안 제5조제27호)

-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과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바.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권한을 학교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2호)

-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제2항에 의거 근무시간이 09:00-18:00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라 1982. 11. 26.과 1985. 2. 6.에 총무처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한 공문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에 따라 근무시간을 09:00-17:00까지 하고 있음.

-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각급 학교에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다른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노동조합과 대정부사이에 학교근무자의 근무시간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토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대정부 단체협약 제46조),

- 또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단위 학교의 장이 조정·시행하여 동일근무지에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근무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사.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8호, 제7조제6호)

- 현재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에 대한 권한은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함.
-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차량교체·교환사항을 위임하게 되면 각 학교 및 기관의 실정에 맞는 수급계획수립으로 행정능률향상과 사무간소화 등의 이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이로 인해 다소 방만한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 열악한 충북교육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 분권화, 자율화 경향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인 학교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향후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제8호 및 안 제7조제6호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시·도의 위임사례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마.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바.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사.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자. 관할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3. 공립 관할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

4. 평생교육 운영 및 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평생교육활동 지도·지원

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수리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마.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보고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징수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
 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
 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
 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
 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7.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관할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
8.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9.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10.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1.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12. 관할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
13. 관할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4. 관할학교의 학칙 제정·변경 인가 (단, 사립 초·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15. 중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 가. 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
 - 나.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
 -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 라. 법인의 예산·결산 수리
 - 마.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바. 법인의 보고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사.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 아.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자. 과태료 부과 징수
16.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7.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법인의 차입 허가
 - 나. 법인의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다. 법인의 증자보고 수리
18.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0. 관할 학생회관 정기 휴관일 승인
21.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2.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3. 공립 관할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24. 관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항
- 가.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 나.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사항
 - 다. 시정명령 등
 - 라. 공유 재산 심의회의 자문

마. 국유 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25.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라. 청문

마.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바.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26.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6.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비 감면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8.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확정·정기승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관장 제외)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6.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6조 (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982호, 2008. 9. 2)

제13조 (발신명의) 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1996.5.3>